

20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사항 신·구 대조표

※ '23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, 글상자 표시, 일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·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

쪽 ('24 기준)	기존	개정	사유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- 단,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, 학업,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○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: '21.1.1. 이후 경영주 등록자 - 단,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, 학업, 질병, 임신(10개월) 및 출산(최대 6개월 이내)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을 반영하여 기간 차감
5	<p>다.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세대(대상자 단독세대,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)의 건강보험료 산정액(본인 부담액 또는 부과액)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-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1호)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	<p>다.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준 : 본인세대*의 건강보험료 산정액(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) *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○ '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, 사업 신청 불가 <p><'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% (가구원 4인 기준)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3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현행화 하고,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명시

쪽 ('24 기준)	기존				개정				사유
	구분	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	지역가입자 부과액	혼합** (직장가입자 +지역가입자)	구분	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	지역가입자 부과액	혼합* (직장가입자+ 지역가입자)	
	본인세대*	216,279원	233,478원	219,871원	본인세대	230,142원	196,236원	233,952원	
17 ~ 18	<p>3)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·컨설팅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 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○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·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, 실현 가능성 확인 및 보완의 기회 제공 <p>< 기관별 역할 ></p>				<p>3)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·컨설팅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 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○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·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, 실현 가능성 확인 및 보완의 기회 제공 <p>< 기관별 역할 ></p>				<p>○ 농촌진흥청 예산 현황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 관련 내용 삭제</p>

쪽 ('24 기준)	기존	개정	사유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농촌진흥청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(청년농업인육성팀)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·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등 지도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농촌진흥청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(청년농업인육성팀)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·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등 지도 	
19 ~ 20	<p>(1) 의무교육 과정 이수 <의무사항>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<별표 1>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,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,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- 개인별 이수시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, 선택 교육 이수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* (필수교육) 사업선정 1년차 40h, 2~3년차 20h(집합교육 7h×2회, 현장지원단(지자체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)활동 6h)</p> <p>* (선택교육)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- 당년도 4월 ~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 시간 산정(연간 최대 96시간)</p> <p>※ 산정방식 : 필요이수시간 = 지원금 수령 개월 수 × 8 시간(연간 최대 96시간)</p> <p>*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,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</p> <p>* 1~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</p> </div>	<p>2) 의무교육 과정 이수 :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<별표4>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무교육 과정은 필수*(농식품부에서 주관) 및 선택과정(농업교육포털에서 등록 가능한 과정, 자율적 선택)으로 구분 *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, 해당 지역 교육 종료 등에 따라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 교육과정 이수 가능 ○ 필수교육 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립경영연차와 관계없이 선정된 연차별로 필수 교육 이수 * 독립경영 예정자는 선정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 인정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필수교육 시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업선정 1년차) '24년 선정자, 28시간 *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(2), 워크숍(14), 비대면 교육(12) - (사업선정 2년차) '23년 선정자, 8시간(집합교육) - (사업선정 3년차) '22년 선정자, 8시간(집합교육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택교육 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, 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대상자의 영농 집중과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의무교육 시간 등 개선

쪽 (‘24 기준)	기준	개정	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‘농업교육포털’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(이수증 출력)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포털(www.agriedu.net) 등록과정인지 확인 필요 - 단,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,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, 정부인증(친환경, GAP, HACCP, 저탄소 농축산물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 등),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’ 등 * 농식품부 주관 농업·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② 품목별 연구회(시·군 농업기술센터), 경영체컨설팅(농정원), 기술컨설팅(농업기술진흥원) 등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가능 ○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나, 수강시간의 50%를 선택 교육시간의 40% 이내에서 인정 - 단, 도서지역*(제주도 제외)은 선택 교육시간의 70%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*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(도서지역) 	<p>최대 72시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% 이내에서 인정 * 단, 도서지역(제주도 제외,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(도서지역))은 선택 교육시간의 70%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※ 선택교육 시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교육시간)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 시간 산정 * 당년도 4월~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(연간 최대 72시간) * 산정방식 : 필요 이수시간 = 지원금 수령 개월 수 × 6시간(연간 최대 72시간) </div>	
62	< 신설 >	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포기서	○사업 포기서 양식 마련